

「시흥 센트럴 헤센」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주택청약 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로 변경되었으니 청약 접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 신청을 하셔야 하며,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배정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로 배정된 세대수(예비대상자 포함)까지 가능하며, 당첨자 선정방법은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 본 안내문상의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지자체 협의 및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23.04.28.(금) 예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 **공급위치** :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109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5층 7개동 총 494세대 중 준공후 분양(일반분양) 38세대
- **입주시기** : 본 주택은 2022년 09월 준공된 아파트로 금회 공급하는 세대의 입주는 잔금 납부 시 즉시 입주 가능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수]

주택 구분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총공급 세대수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확정	(예비)
민영 주택	059.9932	59	59.9932	20.2675	80.2607	39.5439	119.8046	15	2	(10)
	084.9692A	84A(84A0)	84.9692	28.9573	113.9265	56.0066	169.9331	2	-	-
	084.9638B	84B(84A1)	84.9638	28.4117	113.3755	56.0030	169.3785	12	1	(5)
	084.9513C	84C(84B0)	84.9513	28.7589	113.7102	55.9948	169.7050	3	-	-
	084.9443D	84D(84B1)	84.9443	27.7418	112.6861	55.9902	168.6763	6	-	-
	합 계								38	3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실,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입니다.
- ※ 이 아파트는 2022.09에 입주한 후분양 아파트로 청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층·향·호별 구분 없이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기관별 배정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85㎡이하 민영주택 10% 범위 내 공급 [단위 : 세대수]

구분		59	84A(84A0)	84B(84A1)	84C(84B0)	84D(84B1)	합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장애인	경기도	2 (10)	-	1 (5)		-	3 (15)
계		2 (10)	-	1 (5)		-	3 (15)

- ※ 각 주택형 및 기관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2. 분양 일정(예정)

구분	일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4.28.(금) 예정	일간신문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특별공급 접수일자 [인터넷청약 원칙]	2023.05.08.(월) 예정 09:00~17:30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홍보관 방문접수가 가능하나 가급적 인터넷 신청을 권장. * 홍보관 방문 신청 시(10:00~14:00) ※ 자격입증 서류 지참 필수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발표]	2023.05.16.(화)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또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 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p>■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p>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무주택 요건	<p>※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p>										
청약 자격 요건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 주체에 통보한 분</p> <p>- 청약통장 가입요건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제외)</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 [청약예금의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시흥시 및 경기도</th> <th>서울특별시</th> <th>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이하</td> <td>200만원</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r> </tbody> </table>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p>			구분	시흥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광역시	전용면적 85㎡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구분	시흥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광역시								
전용면적 85㎡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단,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3조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외)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2018.12.11.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 등")은 주택수에 포함 (단, 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4조에 따라 재당첨 제한 기한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5조에 따라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단,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5조 각호에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함)
-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민,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등 제외)
-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 내에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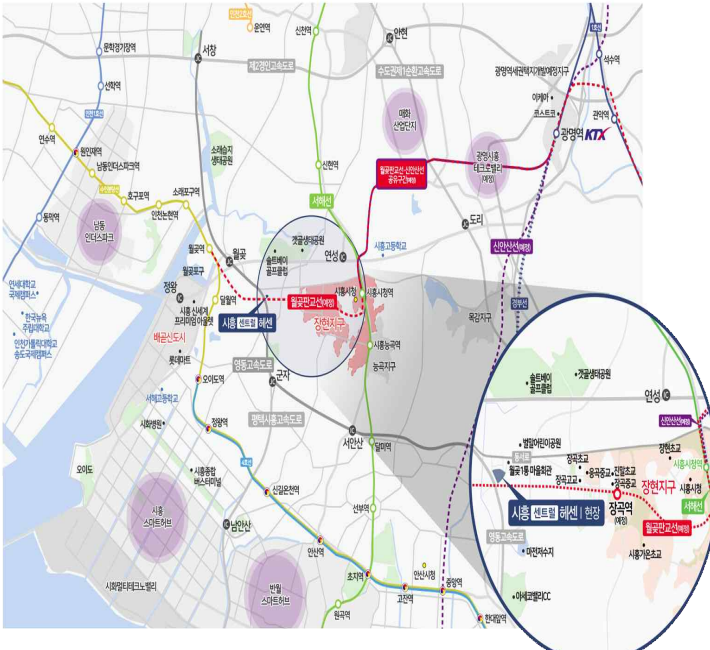
■ **당첨자 선정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조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 일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 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 (한국부동산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은 당첨자 발표일에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개별 조회 가능합니다. (개별통지 불가, 본인 확인)
- 예비 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의 같은 주택형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 청약, 전매 및 재당첨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청약자격 확인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금회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확정되므로 각 기관에서 당 사업주체에 통보한 사항의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택형, 추천기관명, 연락처 등)
- 당첨자발표일이 일반공급 당첨자발표일과 동일하게 변경됨에 따라, 본인에 한하여 동일주택 내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중복 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며, 동일 세대내 중복 특별공급 청약은 불가합니다. 또한,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자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 등)에 중복청약 하는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중복당첨으로 인한 당첨자 명단 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업 주체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당첨자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역을 기반으로 정당성 여부를 재검증하고 불일치 할 경우 소명 등 일반공급 처리와 같은 절차를 거쳐 부적격여부를 판정합니다.
- 신청자가 상기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23.04.01 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관계법령과 상이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분양사무실, 팜플렛 및 시흥 센트럴 헤센 홈페이지 (www.sh-hessen.co.kr)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사항 안내

<p>▶ 위치도</p> 	<p>▶ 연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주소 : http://sh-hessen.co.kr/ ■ 홍보관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월동중앙로 55 ■ 홍보관 대표번호: 1877-2899
--	--